

의안번호	제 20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10월 10일 【 제174회 】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 년 9 월 29 일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 안 건 명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 제안이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수도사업 생산능력이 일정규모(1일 : 15,000톤)이상인 경우 지방공기업 법령의 적용을 받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의 운영에 따른 조직과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함(안 제4조)
- 2)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설치를 위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3)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4)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공급되는 경비 또는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안 제11조)
-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창업 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6)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7) 정상적인 운영자금 등 유사사업으로 자금이 필요시 군수의 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8) 수도사업량의 증가로 예산이 없고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안 제15조)

4. 조례제정안 : 별첨

5.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6.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2006. 7.10~7.31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8. 제안자 의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음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음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음성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음성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음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 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